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06. 20)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래 만]

목 차

I. 검토경과	1
II. 제출근거	1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1. 결산총괄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2
4. 세입·세출 처리상황	2
5. 일반회계 결산	3
6. 특별회계 결산	4
7.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	5
8. 계속비 결산	7
9. 예비비 지출	8
10. 다음연도 이월사업	10
IV. 기금결산	11
V. 채권액결산	12
VI. 채무액결산	13
VII. 보조금결산	13
VIII. 기타 검토의견	14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0.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19. 5. 31.
- 상정일자 : 2019. 6. 20.(제1차 총무위원회)
- 의안번호 :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2019~72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21)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762,499	760,510	452,643	307,867
일반회계	688,580	685,158	415,063	270,095
특별회계	73,919	75,352	37,580	37,772

2. 세입결산(결산서 p33)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 손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762,499	765,091	760,510	1,389	3,192	99.7	99.4
일반회계	688,580	689,160	685,158	1,376	2,626	99.5	99.4
특별회계	73,919	75,931	75,352	13	566	101.9	99.2

3. 세출결산(결산서 p3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679,027	83,472	762,499	452,643	104,425	3,258	202,173
일반회계	613,496	75,084	688,580	415,063	98,759	3,211	171,547
특별회계	65,531	8,388	73,919	37,580	5,666	47	30,626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7)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계	760,510	452,643	307,867	55,747	28,478	12,773	4,347	206,522
일반회계	685,158	415,063	270,095	53,322	25,237	12,773	4,300	174,463
특별회계	75,352	37,580	37,772	2,425	3,241		47	32,059

5. 일반회계 결산

○ 세 입(결산서 p42)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688,580	689,160	685,158	1,376	2,626
지방세 수입	24,661	28,292	26,925	147	1,220
세외수입	16,583	21,818	19,293	1,229	1,296
경세외수입	6,902	8,149	8,106		43
임세외수입	9,681	13,669	11,187	1,229	1,253
지방교부세	244,397	248,153	248,153		
조정교부금등	21,198	21,199	21,199		
보조금	163,857	155,950	155,95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17,884	213,748	213,638		110

○ 세 출(결산서 p6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반납 액	집행잔액
계	688,580	415,063	98,760	3,210	171,547
의회운영위원회	976	796			180
총무위원회	372,661	203,804	7,692	1,589	159,576
산업건설위원회	314,943	210,463	91,068	1,621	11,791

○ 총무위원회 소관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373,637	204,600	7,692	1,589	159,756	
의 회 사 무 과	976	796			180	
총 무 위원회	소 계	372,661	203,804	7,692	1,589	159,576
	기 획 감 사 실	155,993	6,853	144	2	148,994
	민 원 봉 사 실	931	861			70
	행 정 과	63,669	59,384		2	4,283
	기 업 지 원 과	3,794	1,824	888		1,082
	재 무 과	5,855	5,335	132		388
	복 지 정 책 과	92,159	87,825	1,164	960	2,210
	문 화 관 광 과	12,628	8,034	3,760	22	812
	보 건 소	10,347	8,479	820	493	555
	평 생 교 육 센 터	6,582	6,030	50	110	392
	체 육 시 설 사 업 소	7,499	6,718	412		369
읍 면	13,204	12,461	322		421	

6. 특별회계 결산

○ 세 입(결산서 p190)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A)	수 납 액 (B)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계	73,919	75,931	75,352	12	567
공 기 업	42,610	44,454	44,393	12	49
의 료 보 호 기 금	818	816	816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	42	42	0	0
주 차 장 관 리	645	1,166	648	0	518
산업단지조성사업	5,049	4,679	4,679	0	0
수 질 개 선	6,094	6,094	6,094	0	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97	597	597	0	0
농 업 발 전 기 금	18,064	18,083	18,083	0	0

○ 세 출(결산서 p19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보조금반납 액	집행잔액 (D=A-B-C)
계	73,919	37,580	5,666	47	30,626
공 기 업	42,610	26,755	4,363	0	11,492
의 료 보 호 기 금	818	773		30	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	42			
주 차 장 관 리	645	185			460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5,049	2,065	447	5	2,532
수 질 개 선	6,094	5,185	827	12	7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96	562	29		5
농 업 발 전	18,065	2,013			16,052

7.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253)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253)

전 용(일반회계)(결산서 p25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3건	10,059	259	259	

이 체(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결산서 p257)

검 토 의 견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군정홍보 및 광고, 공무원 역량강화, 재해구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주민편익사업 추진, 주거급여,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과수 품질 향상, 영농현장연구,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8. 계속비 결산(결산서 부속서류 p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34,222	13,693	20,522	7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1,997	1,060	937	
거창 향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043	541	1,502	
거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2,580	1,196	1,377	7
거창 향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6	46		
덧시골 폭포 등산로 연결사업	2,129	1,885	244	
거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100	44	56	
대산지구농촌테마공원조성	198	198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	2,867	2,003	864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1,219	527	692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15,117	3,478	11,639	
권역단위종합개발	2,757	1,039	1,718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506	313	193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922	787	135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578	457	121	
시군창의	677	69	608	
취약지구개조(궁항지구)	486	50	436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피트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등 총 16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모두 타당함.

9. 예비비 지출(결산서 p261)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합 계			896,600	465,199	359,366	72,036
건 설 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한발대비 용수개발	20,000	19,606		394
	농업생산기반시설	한발대비 용수개발	5,500	5,500		
	농업생산기반시설	한발대비 용수개발	15,000	15,000		
	도 로 관 리	도로유지관리	6,000	4,730		1,270
농업기술센터	축산업육성	가축 사육환경 개선	276,000	236,606	39,395	
	축산업육성	가축 사육환경 개선	194,100		162,471	31,629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	원예특작 안정생산	40,000	40,000		
	과수산업 생산기반조성	과수 품질 향상	165,000	126,257		38,743
	과수산업 생산기반조성	과수 품질 향상	175,000	17,500	157,500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으로 인한 뚝방설치와 지산지구 용수개발사업은 농가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정개발 사업임.
- 농업기술센터 가축 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7월 폭염에 따른 축사시설 선풍기, 환풍기, 동력분무기, 에어컨 등 추가 지원 사업이었으며, 원예특작 안정생산 사업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이동식 스프링클러 지원, 과수 품질 향상 사업은 폭염에 따른 시설포도원 공기배출용 환풍기 지원과 가뭄대비 과수원 관정 지원 사업으로 재정집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10.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373)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313	303,571	104,425	
명 시 이 월	109	139,728	56,631	
사 고 이 월	177	135,270	28,650	
계 속 비 이 월	27	28,573	19,144	

검 토 의 견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 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위치 미확정,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IV 기금결산(결산서 p285)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7종)	12,878,560	254,955	864,969	610,014	13,133,516
식 품 진 흥 기 금	66,506	17,812	25,072	7,260	84,318
중소기업육성기금	6,560,226	-13,012	91,795	104,807	6,547,214
사 회 복 지 기 금	3,376,363	112,309	161,199	48,890	3,488,672
재 난 관 리 기 금	1,026,850	119,447	540,753	421,307	1,146,297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00,447	7	7,007	7,000	500,454
옥외광고정비기금	260,279	23,058	23,808	750	283,337
체 육 진 흥 기 금	1,087,889	-4,665	15,335	20,000	1,083,224

검 토 의 견

- 2018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 조성액은 13,133,516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64,969천원이고, 사용액은 610,014천원으로 254,955천원이 증가되었음.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식품진흥기금, 아릅예술제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V

채권액결산(결산서 P455)

○ 회계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890,180	58,870	1,065,421	3,883,629
일반 회계	소 계	4,488,827	40,474	880,474	3,648,827
	전화선예치금	12,474	-	12,474	0
	학자대여금	4,343,353	12,474	868,000	3,487,827
	회 원 권	133,000	-	-	133,000
	주택용자금	-	28,000	-	28,000
특별 회계	농업발전기금	5,250	-	5,250	0
기금	사회복지기금	396,103	18,396	179,697	234,802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검 토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4,890,180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58,870천원이 발생하고, 1,065,421천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883,629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234,802천원, 보증금채권 133,000천원, 용자금 채권 3,515,827천원으로 보증금채권은 회원권이고, 용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및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임.

VI 채무액결산(결산서 p463)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VII 보조금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79)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31,790,189 (99,681,894)	129,534,677 (98,872,031)	113,094,408 (63,166,852)	12,846,002 (32,271,817)	3,594,267 (3,433,362)	
일 반 회 계	125,706,840 (98,170,172)	123,451,328 (97,360,309)	107,887,417 (61,924,618)	12,010,245 (32,024,487)	3,553,666 (3,411,204)	
특별 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30,000 (1,955)	30,000 (1,955)	30,000 (1,954)	- -	- (1)
	의료보호기금	185,271 (46,318)	185,271 (46,318)	161,226 (40,306)	- +	24,045 (6,012)
	산업단지조성사업	233,300 (1,457,700)	233,300 (1,457,700)	28,550 (1,194,881)	200,000 (247,330)	4,750 (15,489)
	수질개선	5,634,778 (5,749)	5,634,778 (5,749)	4,987,215 (5,093)	635,757 -	11,806 (656)

- ※ 군비부담액은 98,872,031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76.3%에 해당함
- ※ ()내서는 군비 부담액임.

검 토 의 견

- 2018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29,534,677천원으로 예산액 131,790,189천원 대비 98.3%이고, 집행액은 113,094,408천원으로 예산액의 85.8%이며, 112,846,002천원이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군비부담액은 97,360,309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비하여 78.8%에 해당됨.

VIII

기타 검토의견

-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
-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함.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거창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치출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 재정 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간 합리적 재원배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재정 운용 투명성과 재정관리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18년도 총 세입액은 760,510백만원, 총 세출액은 452,64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307,867백만원임. 세입대비 40.5%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자원 배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임.
- 총 세입은 760,5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559백만원(11.1%)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348,153백만원(36.2%)이고, 보조금 155,950백만원(21.4%), 조정교부금 21,199백만원(3.1%), 지방세는 26,925백만원(3.9%), 세외수입은 19,293백만원(2.8%)으로 우리군 재정은 자체재원(7.6%)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56.8%)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세출은 452,64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724백만원(4.7%)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20.6%), 농림해양수산(18.9%), 기타(12.4%), 국토 및 지역개발(10.18%)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전년대비 215.8%), 보건(전년대비 124.7%), 공기업특별회계(전년대비 121.5%)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이나 시책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으로 13,133,516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64,969천원이고, 사용액은 610,014천원으로 254,955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최근 5년간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14.8%p 낮은 편으로
-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최근 시행중인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한 6건의 대형 사업들은 행정절차 이행지연, 집단민원 발생, 인근주민과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부진한 실정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